참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청구사건[1)]

1. 사건개요

일본은 참의원 비례대표선거제를 개인에게 투표하던 방식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제도로 변경하기 위해 1982년, 종전의 전국구제를 폐지하고,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2)] 도입하였다. 그러나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면면이 드러나지 않고, 과도한 정당화와 정당에 의한 명부 등재자 순위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2000년,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3)] 다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2018년, 법률 제75호 공직선거법 개정[4)](이하 '본건 개정'이라 한다)을 통해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구속명부식을 유지하면서 정당 등이 후보자로 할 자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당선인이 되어야 할 후보자(이하 '특정 틀의 후보자'라 한다)를 정할 수 있는 특정 틀 제도를 도입하였다(이하 본건 개정 후의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 선거제도를 '본건 선거제도'라 한다).

본건 개정에 의해 정당 등은 특정 틀의 후보자 성명 및 순위를 다른 후보자의 성명과 구분하여 참의원 명부에 기재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 틀 후보자의 당선 순위는 다른 후보자보다 상위가 되며, 다른 후보자들은 득표수가

---

1) 2020년 10월 23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令和2年(行ツ)第23号, 선거무효청구사건).

2) 정당 등이 서로 득표로 경합하여 사전에 공표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대응하는 수에 이르기까지의 사람을 당선인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명부식 비례대표제라 하며, 이때 정당 내의 당선인이 되어야 하는 순위가 명부상 정해져 있는 것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라 한다.

3) 유권자에게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 개인을 선택할 자유를 주고, 정당 내의 당선인이 되어야 할 순위는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라 한다.

4) **일본공직선거법** 제86조의3 ① 참의원(비례대표선출) 의원 선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는 해당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의 명칭(하나의 약칭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된 자(해당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98조 제3항에서도 같다.)의 성명을 기재한 문서(이하 '참의원 명부'라 한다)를 선거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참의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이하 '참의원 명부 등재자'라 한다)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후보자로 하는 자 중 일부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선인이 될 후보자로서 그 성명 및 후보자들 사이에서 당선인이 될 순위를 그 밖의 후보자로 하는 자의 성명과 구분하여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문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해진다.

본건은 2019년 7월 21일 시행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중 비례대표 선출 의원 선거에서 선거인 X 등이 본건 개정에 의해 도입된 이른바 특정 틀 제도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헌법 제43조에[5]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본건 선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이다. X들은 특정 틀 제도는 선거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당의 사정으로 의원이 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정 틀 제도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헌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6] X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X들이 상고한 사안이다.

2. 판결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3. 판결이유

[다수의견(재판관 4인 전원일치)]

상고인은 특정 틀 제도는 선거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원이 선출되는 것과 같으며, 본건 개정 후의 공직선거법에서 이 제도에 대해 정하는 규정은 헌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고, 또한 본건 선거와 같은 날에 시행된 참의원의 선거구 선출 의원선거는 동법이 정하는 정수 배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본건 선거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본건 선거제도는 정당 등에 미리 후보자의 성명 및 특정범위의 후보자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등을 기재한 명부를 신고하게 한 후, 선거인

---

5) **일본헌법** 제43조 ① 양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로 뽑힌 의원(議員)으로 조직한다.

6) 東京高判令元 · 12 · 4〔裁判所website、LEX/DB25570699〕.

이 명부 등재자 또는 정당 등을 선택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각 정당 등의 득표수(해당 정당 등과 관련된 각 참의원 명부 등재자의 득표수를 포함한다)에 근거하여 당선인수를 결정한다. 이후, 각 정당 등의 명부에 기재된 특정범위의 순위 및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투표 결과, 즉, 선거인의 총의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선거인이 후보자 개인을 직접 선택하여 투표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본건 개정 후의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 의원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헌법 제43조 제1항 등의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최고재판소 평성 11년 판결,[7] 평성 15년 판결에서[8]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그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원문밑줄) 나아가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중 비례대표 선출 의원의 선거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 구조의 헌법적합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앞서 서술한 1999년 대법정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상과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채택할 수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보충의견(재판관 1인)]

1) 먼저 용어를 정의하면, '전통적 선거제'란 후보자 개인이 상호간에 득표로 경합하여 각자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는 선거제도를 지칭한다. 반면 '명부식 비례대표제'란 정당 등(이하 '정당'이라 한다)이 서로 득표로 경합하여 사전에 공표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대응하는 수에 이르기까지의 사람을 당선인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가리키며, 정당 내의 당선인이 되어야 하는 순위가 명부상 정해져 있는 것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유권자에게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 개인을 선택할

7) 最高裁平成11年(行ツ)第8号同年11月10日大法廷判決 · 民集53巻8号1577頁.
8) 最高裁平成15年(行ツ)第15号同16年1月14日大法廷判決 · 民集58巻1号1頁.

자유를 주고, 정당 내의 당선인이 되어야 할 순위는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2) 다수의견은 본건 선거제도가 '투표 결과, 즉, 선거인의 총의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 선거제와 다른 점이 없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나는 명부식 비례대표제, 특히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전통적 선거제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으며, 이를 전통적 선거제와 동등한 것으로서 논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 본건 개정에 의해 도입된 특정 틀 제도는 전적으로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행해지던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 의원 선거의 일부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내 당선인이 되어야 할 순위에 유권자에 의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및 당선인이 되어야 할 순위 결정이 전적으로 정당에 맡겨져 유권자는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전통적 선거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당선인이 되어야 할 사람의 순위가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에서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와는 다르다.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그 선거제도의 구조 자체가 전통적 선거제에 비하여, 국민과 후보자, 나아가서는 당선인(의원)과의 거리가 먼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현행헌법의 제정 전후를 통해 1982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의해 참의원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양 의원의 선거는 모두 전통적 선거제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그 후에도 양 의원 모두 과반수의

의원은 전통적 선거제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제도로 여겨져 왔다.

참의원의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2000년 동법의 개정에 의해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후보자의 면면이 드러나지 않는 선거'라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는 것은 다수의견도 적시한 바와 같다.

4) 헌법은 양 의원의 각 선거제도 구조의 구체적인 결정을 원칙적으로 국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국회가 그 재량에 따라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대표를 선출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선거제도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최고재판소의 판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상기와 같이 전통적 선거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고, 또한 같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도 투표 결과를 당선인이 되어야 하는 순위에 반영할 수 있는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선거 구조 자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정당이 국민의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유력한 매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참의원 의원 선거의 일부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국회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본건 개정 후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참의원 의원의 총 정수는 248명이며, 그 중 비례대표 선출 의원은 100명인 바, 정당이 특정범위의 후보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문상 명부 등재자의 일부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개정에 의해 특정 틀 제도를 도입한 것이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상의 견지에 입각하여 검토하더라도 본건 선거가 위헌, 무효가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4. 판결의 의의

(1) 의의

본 판결은 일본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특정 틀 제도의 합헌성이 쟁점이 된 첫 사례다. 본 판결은 본건 선거제도의 합헌성을 종래의 판례에 의거하여 간략히 인정하는 동시에 종례의 판례와 차별을 두는 보충의견도 덧붙여지고 있다.

(2) 비례대표제의 합헌성을 둘러싼 판례의 전개

비례대표제의 합헌성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처음 판단을 내린 것은 중의원 선거에서의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1999년 대법정 판결이다.[9] 1996년 대법정 판결에서는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되어 선거인이 후보자 개인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점과 명부상 동순위의 중복 입후보자의 당선이 소선거구 선거의 석패율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다는 점에서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직접선거의 요청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선거제도 체계의 구체적인 결정은 헌법상 국회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한 후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투표 결과, 즉, 선거인의 총의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선거인이 후보자 개인을 직접 선택하여 투표하는 방식과 다른 점은 없고, 중복 입후보자간의 당선순위도 결국 당선인이 되어야 할 순위는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2004년 대법정 판결에서는[10] 참의원 선거에서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합헌성이 문제가 되었다. 2004년 판결에서는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9) 最大判平11 · 11 · 10民集53巻8号1577頁.
10) 最大判平16 · 1 · 14民集58巻1号1頁.

가 명부 등재자에게는 투표하고 싶지만 소속 정당에는 투표하고 싶지 않다는 투표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초과 득표에 상당하는 표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명부 등재자의 당선에 유용된다는 점에서 직접선거 요청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종전의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정당본위의 명부식 비례대표제인바, 국회가 정당의 국정상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정당을 매체로 하여 국민의 정치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는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부 등재자 개인에게는 투표하고 싶지만 정당 등에는 투표하고 싶지 않다는 투표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선거권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투표 결과, 즉, 선거인의 총의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는 점에서 선거인이 후보자 개인을 직접 선택하여 투표하는 방식과 다른 점은 없고',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한 당선순위 결정도 '당선인 결정에 선거인 이외의 사람의 의사가 개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상과 같이 최고재판소는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개념 하에 구속명부식과 비구속명부식을 하나로 묶은 후,[11] 헌법상의 허용성을 정당의 '국정상의 중요한 역할'에서 도출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형성에 관련되는 입법재량을 구속할 수 있는 헌법적 요청으로서 선거권의 보장과 직접선거의 요청이 쟁점이 되었지만, 선거권의 보장은 '정당에는 투표하고 싶지 않다'는 투표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상 자명하며,[12] 개인에 대한 투표에 정당 투표라는 의미가 수반됨에 따른 투표 의사와의 불일치를[13] 포함하여 선거권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

---

11) 寺島壽一,「判批」平成16年度重判解, 2005, 14頁.
12) 福井章代,「判解」最判解民事平成16年度, 2007, 12頁.
13) 藤井樹也,「判批」セレクト2004, 2005, 4頁.

직접선거의 요청은 이러한 요청이 헌법상의 요청임을 전제로 하여[14] 구속명부식이든 비구속명부식이든, '투표 결과=선거인의 총의'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이 합헌 판단의 결정적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15] 동 요청의 규범 내용으로서 관념되어 온 것은, '당선인 결정에 있어서의 선거인 이외의 사람의 의사 개진 금지'라고 할 수 있다.[16] 이에 반해 정당이 아닌 '후보자 개인을 선택할 자유'는 직접선거 요청의 맥락에서도 입법재량을 구속하는 헌법상의 위상을 부여받지 못했다.

(3) 평가

1)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본건 개정 후 공직선거법의 합헌성을 선례에 의거하여 간단히 인정했으며, 직접선거의 요청과 관련된 기존 판례의 설시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본건 선거제도의 합헌성을 종래 판례의 사정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합헌성 심사의 대상을 특정 틀 제도가 아니라 본건 선거제도의 구조 전체로 설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본건 선거제도는 구속명부식과 비구속명부식의 조합에 지나지 않고, 종래의 판례에서 이미 합헌 판단이 제시된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특정 틀 제도의 도입으로 당선인 결정에서 정당의 판단이 점하는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특정범위 내의 후보자 성명 및 순위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를 전제로 하여 선거인이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당선인이 결정되는 이상 선거 후에 정당이 당선인을 임의로 선택·변경하는 구조

14) 大橋寛明,「判解」最判解民事平成11年度, 2002, 756頁; 福井章代,「判解」最判解民事平成16年度, 2007, 15頁.
15) 石田榮仁郎,「判批」平成11年度重判解, 2000, 20頁; 大橋寛明,「判解」最判解民事平成11年度, 2002, 756頁; 野中俊彦, 非拘束名簿式比例代表制および選挙区選出議員定数配分規定の合憲性, 法教286号, 2004, 6頁; 新井誠, 参議院議員選挙をめぐる2つの最高裁大法廷判決, 法セ594号, 2004, 71頁; 福井章代,「判解」最判解民事平成16年度, 2007, 15頁.
16) 林知更,「判批」長谷部恭男ほか編『憲法判例百選Ⅱ〔第7版〕』, 有斐閣, 2019, 335頁.

라고는[17]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당선인 결정에 있어서 선거인 이외의 자의 의사매개 금지라는 직접선거 요청의 규범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의 사정 내에 있다고 한다. 이에 특정 틀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18]

첫째, X 등이 제1심에서 주장한 특정 틀 제도 목적의 정당성이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입법자의 설명에 의하면, 특정 틀의 목적은 '전국적인 지지 기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정상 유익한 인재', '민의를 매개하는 정당이 그러한 역할을 완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재'의 당선을 용이하게 함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2015년 개정에 의한 합구 대상 선거현의 의원 구제에 있으며, 국회 심의 등에 있어서도 법안의 제안자가 이러한 취지를 반복하여 답변하고 있다.[19] 특정 틀의 목적이 이러한 점에 있다면, 특정지역을 우대하는 것의 정당성과 도도부현의 대표라는 고려 요소를 비례대표 선거의 제도 형성에서 고려하는 것의 허용성이[20]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21]

둘째, 특정 틀 제도는 제도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 자신의 기본원칙으로부터의 불합리한 일탈을 헌법상 문제로 삼는 체계적합성의 요청(수미일관의 요청)과의 적합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22] 비구속명부식을 입법자의 기본원칙으로 한다면 구속명부식을 일부 도입한 형식인 특정 틀 제도는 이와 충돌한다.[23] 2000년 개정이 종전의 구속명부식을 대체한 비구속명부식의 도입인 이상, 입법자의 기본원칙은 단순히 정당본위의 선거제도뿐만 아니

---

17) 이러한 구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高橋和之,「国民の選挙権 vs. 政党の自律権」, ジュリ1092号, 1996, 53~54頁; 高田篤,「判批」長谷部恭男ほか編『憲法判例百選Ⅱ〔第6版〕』, 有斐閣, 2013, 343頁.

18) 上田健介, 参議院選挙制度と議員定数訴訟の課題, 憲法研究5号, 2019, 179頁; 只野雅人, 投票価値の平等と二院制の趣旨, 判時2455号, 2020, 110頁.

19) 皆川健一, 参議院選挙制度に関する公職選挙法の一部改正, 立調404号, 2018, 12頁; 藤井延之＝中尾正英, 公職選挙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参議院選挙区選挙における較差の縮小、参議院比例代表選挙における特定枠制度の導入等）について, 選挙時報67巻12号, 2018, 13頁.

20) 上田健介, 参議院選挙制度と議員定数訴訟の課題, 憲法研究5号, 2019, 179頁.

21) 입법목적을 입법자의 설명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제1심도 입법자에 의한 설명을 근거로 특정 틀의 '입법목적 및 입법수단이 정당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2) 櫻井智章,「判批」判評708号, 2018, 156~157頁; 棟居快行, 憲法の原理と解釈, 信山社, 2020, 441~443頁.

23) 上田健介, 参議院選挙制度と議員定数訴訟の課題, 憲法研究5号, 2019, 178頁.

라 국민이 후보자 개인을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점에도[24]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본원칙에 입법자 자신을 구속하는 의의를 부여하려면 해당 기본원칙에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한 바,[25] 관련된 기본원칙이 선거권 보장 내지 직접선거 요청의 취지에 적합하고 헌법적 기초가 주어진다면, 특정 틀 제도의 도입을 체계적합성 요청에서 헌법상 문제시 할 여지도 있다고 한다.

2) 보충의견

보충의견은 다수 의견 결론에 기여하면서도 기존 판례와는 다른 헌법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후보자 개인을 선택할 자유라는 관점에서 추출된 각 선거제도의 특성 및 선거제도의 형성과 관련된 의무적 고려사항이라는 형태로 입법재량을 구속할 수 있는 헌법상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후보자·당선자의 거리와 관련된 선거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시에 나타나 있으며, 투표가치의 평등과 같은 다른 고려요소와의 조정 속에서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26] 그러한 헌법상의 계류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국민과 후보자·당선자간의 거리를 논하는 형태로 볼 때, 직접선거의 요청에 의해 많은 규범 내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7]

보충의견은 직접선거 요청에 있어서 '당선인의 결정에 있어서 선거인 이외의 자의 의사개진금지'를 초과하는 의의를 인정해 오지 않았던 종래의 판례에 대하여 '후보자 개인을 선택할 자유'의 관점을 선거제도의 형성과 관련된 의무적 고려사항으로서 평가하고, 입법재량을 구속하는 일정한 헌법적 기초를 부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4) 高見勝利, 芦部憲法学を読む, 有斐閣, 2004, 140~141頁.
25) 毛利透, 投票価値較差訴訟の現状と課題, 判時2354号, 2018, 137頁.
26) 篠原永明, 制度形成の統制, 法時91巻5号, 2019, 26~28頁.
27) 宍戸常寿, 憲法解釈論の応用と展開〔第2版〕, 日本評論社, 2014, 191頁.